

2.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 施行令中 改正令

대통령령 제15,505호 1997. 10. 30

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주거환경개선지구는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후 주차난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공용주차장설치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며,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”을 “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·직할시장”을 “특별시장 및 광역시장”으로

한다.

제4조 제2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 제4항중 “서울특별시·직할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다만, 1천제곱미터이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대상지역의 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이상 이어야 한다.

제6조 제4항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대통령

령령이”로 한다.

제7조 제2항 본문 중 “준공검사필증”을 “사용검사필증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”을 “건축법 제23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3항 본문 중 “법 제11조 제1항”을 “법 제11조 제1항 단서”로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공공시설 정비계획	가. 도로계획 나. 상·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 다. 공용주차장의 설치 라.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
-----------------	--

별표 2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공시설 의 정비	가. 도로정비 나. 상·하수도의 정비 다. 공용주차장의 설치 라.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
-----------------	--

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“60제곱미터이하”를 각각 “85제곱미터이하”로 하고, 동호다목중 “20제곱미터 내지 40제곱미터”를 “60제곱미터이하”로 하며, 동표 제4호가목중 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”을 “주택건설촉진법령”으로 하고, 동호나목 중 “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”을 “임대주택법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